

제 419 호

1973. 12. 7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 시보

차 례

이 연공보통증서는 마약류의  
 판매를 금지하였음.  
 서울특별시 시민의장

- 조 례
  - 제 806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3
  - 제 807호 서울특별시립묘지설치조례..... 3
- 규 칙
  - 제1332호 서울특별시립운동장직체중개정규칙..... 5
- 고 시
  - 제 184호 건축법상권한위임..... 6
  - 제 187호 상품권발행자의준수사항..... 7
  - 제 188호 서울특별시자료성분등록고시..... 17
  - 제 189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8
- 공 고
  - 제 227호 환지예정지지정을위한공람공고..... 24
  - 제 228호 환지계획변경을위한공람공고..... 24
- 사 령..... 25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3. 12. 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하 점 생

◎ 서울특별시조례제 806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제정 1964.10.27. 조례제 355호  
개정 1973.12. 5. 조례제 806호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수수료로서 1인당 500원을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4년도 공, 사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순위고사 시행시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립묘지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3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 서울특별시조례제 807 호

서울특별시립묘지설치조례 제 1 조 ( 목적 )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 또는 유골의 매장을 위한 분묘지를 공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묘지 ( 이하 " 묘지 " 라한다 ) 를 둔다.

제 2 조 ( 명칭과위치 ) 묘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 3 조 ( 관리사무소 ) 묘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묘지관리사무소와 그 지소를 두되 그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 4 조 ( 공무원 ) ① 묘지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4 급잡류인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받아 소관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소장 이외에 관리사무소 및 지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 조 ( 묘지의사용 및 사용료 ) 묘지의 사용과 사용료에 관하여는 따로

<p>조례로 정한다.</p> <p>제 6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p>	<p>로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묘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p>
--	---

“ 별 표 ”

명 칭	위 치
서울특별시립 공원 묘지	경기도파주군광탄면용미리산 65-1
서울특별시립 용미리 묘지	경기도파주군광탄면용미리산 91-1, 산 92-2, 산 93-5, 6, 산 94, 산 95-1, 산 96, 산 97-1, 산 98, 산 107, 산 102-2, 산 105, 조리면장곡리산 61-1,
서울특별시립 벽제리 묘지	경기도고양군벽제면벽제리산 4-1, 산 5, 산 5-1
서울특별시립 내곡리 묘지	경기도양주군진접면내곡리 558-3, 산 99-1.
서울특별시립 망우리 묘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망우동산 57-1, 산 51-2, 산 56, 산 57-3, 4, 산 58, 연동동산 1-1, 산 1-3, 양주군구리면교문리산 34, 산 37, 산 145, 산 60, 산 84-1, 2, 산 39-32, 33, 34, 35, 36, 37, 38, 40, 41, 42, 43, 44, 45, 59, 60, 61, 62, 63, 64.

**규 칙**

서울특별시립운동장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3. 12. 6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규칙제 1332호

서울특별시립운동장직제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운동장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내지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담당관) 장장을 보좌하게하기 위하여 운영담당관과 기술담당관을 두고 운영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술담당관은 지방전기기좌 또는 지방건축기좌로 보한다.

제 4 조 (운영담당관) ① 운영담당관 밑에 운영계와계리제를 두고 운영계장과 경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운영담당관의 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계

가. 문서, 관인

나. 인 사

다. 물품관리

라. 각 경기장의 사용허가

마.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바. 부속시설(식당,매점등)의 운영

사. 입장권의 검인

아. 기타 다른 담당관 및 담당관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 리 계

가. 세입금의 수납

나. 세입, 세출의 현금출납

다. 매 포

라. 각종 사용료의 수납

제 5 조 (기술담당관) ① 기술담당관 밑에 시설계와 기전계를 두고, 시설계장은 지방건축기사 또는 지방토목기사로, 기전계장은 지방전기기사 또는 지방기계기사로 보한다. ② 기술담당관의 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설 계

가.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

나. 건축물과 부속설비의 유지관리

다. 담당관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기 전 제

가. 전기, 통신설비의 설계, 시공  
보수 및 유지관리

나. 난방시설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제 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8 조 (직무대행) 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에는 운영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  
고 장장과 운영담당관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술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9 조 (공무원) 운동장에 두는 공  
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하  
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84 호

건축법 상권한위임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에 제기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

(다만,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 5층이상인 건축물과  
미관지구내 및 특정가구 정비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중 제 2 조 제 15 호 나목,  
제 5 조, 제 6 조 제 3 항, 제 7 조,  
제 7 조의 3 제 2 항, 제 8 조, 제 7  
조의 2 제 2 항, 제 42 조 제 1 항  
제 1 호, 제 4 호 및 동조 제 4 항  
제 43 조와 제 47 조 제 2 항의 규  
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1973년 11월 일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고시제 187 호

상품권발행자의 준수사항 (서울특별시고시제 98 호 1973.6.20)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1973. 12. 5.

서울특별시장

상품권발행자의 준수사항중  
개정 고시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결본등록) ①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본을 서울특별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본등록시 등록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영업감찰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의 등록은 별지 제 1 호 서식의 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한 후 등록된 결본에 별지 제 2 호 서식의 「등록필」인을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 제 1 항의 등록은 년 2 회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기한은 매년 추석 전 10 일과 12 월 15 일로 한다.

제 4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 조의 2 (공탁물의 반환승인)

① 상품권의 발행자가 서울특별시장

으로부터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반환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6 호 서식에 의한 공탁물의 반환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승인신청은 매월 말일 현재의 상품권 발행 및 상환실적을 기준으로 월 1 회 신청하되 최저 공탁액은 상환미필의 금액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장이 공탁물의 반환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면 별지제 7 호 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탁일로부터 1 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공탁물은 이를 반환승인할 수 없다.

제 5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 조의 2 (상환의무) 상품권의 발행자는 소비자가 권면가액 이하의 물품을 선호할 경우 소비자의 요구대로 상환에 응하여야 하며, 상환시의 발생차액이 권면가액의 30 % 이내일 때는 이를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 8 조 및 제 9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8 조 ( 회수상품권의관리 ) ① 상품권의 발행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회수한 상품권에는 그 적당한 여백에 회수일자를 명확히 기재한후 이를 회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성실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이 경과한후 회수상품권을 파기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신청과 승인은 각각 별지 제 8 호 및 제 9 호 서식에 의한다.

제 9 조 ( 사무의 위임 ) 상품권에 관한 규제업무를 보다 능률화하며, 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 2 조 내지 제 4 조의 2 제 7 조와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은 이를 구청장 (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 에게 내부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시장사무취급 규칙 제 3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른 백화점내 점포를 상환할 영업소로 정하여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2. 상품권의 발행 장소와 상환할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구 ( 출장소

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에 있거나 상환할 영업소가 2 개구 이상에 소재하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 별지 ) 서식제 1 호 상품권 등록대장란중 < 등록일 > 란 다음에 < 영업감찰번호 > 란을 삽입한다.

( 별지 ) 서식제 3 호 ( 공탁신고 양식중 < 발행자누계액 > 란 앞에 < 건본등록번호 > 란을 신설한다.

( 별지 ) 서식제 4 호 공탁면제 신청양식중 < 발행누계액 > 란 앞에 < 건본등록번호 > 란을 신설한다.

( 별지 ) 서식제 5 호 상품권 발행보고양식중 < 상품권종별 > 란 앞에 < 건본등록번호 > 란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상 품 권 등 록 대 장

번 호	등록일	영업감찰 번호	발 행 자		상환할 영업소	등록 종류	결 재			비고
			주 소	성 명			담당	계장	과장	







회 사

분류기호 전 화 ( ) 197 . . . .

수 신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출장소장)

제 목 상품권발행보고

상품권법제 10조 제 1항 및 서울특별시고시제 187호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 . . . . 현재 상품권 발행상황을 보고합니다 .

전 본 등록번호	상품권 종 별	발 행 액			상 환 액			미상환누계액	비 고
		전월말	금 월	누 계	전월말	금 월	누 계		

회 사

대 표

인

회 사

분류기호 . 전 화 ( ) 197 .

수 신 서울특별시 장 (구청장, 출장소장)

제 목 공탁물 반환승인신청

1. 상품권법제 5조 및 서울특별시 고시제 187 호 제 4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탁물 반환승인 신청합니다.

가. 신청내역

건 본 등록번호	공탁일	공탁번호	당초미상환액	공탁액	공탁후 상환액	미상환액	금회반환신청

나. 공탁물의내역 (유가증권일때에 한함)

종 류	기 호	번 호	매 수	권 면 액	공 탁 가 격	비 고

회 사

성 명

인

서울특별시

분류기호

197

수신

제 목 공탁물 반환승인

1. 상품권법 제 5조 규정에 의거 귀하가 제출하신 공탁물 반환승인 신청을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가. 승인 내역

1) 공탁번호

2) 공탁년월일

3) 공탁액

4) 금회반환승인액

5) 공탁물의 내역 (유가증권의 경우)

종류	기호	번호	매수	권면액	비고

서울특별시장

회 사

분류기호                      전화 (                      )                      197 . . .

수 신    서울특별시장

제 목    회수상품권 파기승인신청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87 호에 의거 회수상품권에 대하여 파기  
요자 다음과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회수일자	회수매수	파기매수	파기할상품권의총가액	비            고

전본등록번호

회 사

대 표 이 사

인

29-15



◎ 서울특별시사료성분등록고시 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성분등록을  
제 188 호 고시한다.

1973. 12. 5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 9 조의 규정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공 장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사 료		
				종 류	명 칭	용 도
4 - 174	홍성사료공업주식회사	성수동2가 323	정 태 원	배합사료	고전사 깃배 소합료	
4 - 175	"	"	"	"	공중사 깃배 소합료	
4 - 176	"	"	"	"	양돈용 배합사료	용축
4 - 177	"	"	"	"	낙농용 배합사료	용축

사 료 성 분 량				유효기간	비 고	원료별배합율
최 소 량		최 대 량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	%	%	%			
15.0	2.0	13.0	12.0	73.12.5 75.12.4		
13.0	2.0	11.5	11.0	"		
16.0	2.0	4.5	13.0	"	3-N-WC.01 옥수수 40 수수 20 등외품 10대두박 7	기타박류 19.7% 패분 1 인산칼슘 1 비타민 1 페라마이신 0.2
16.0	2.0	4.5	13.0	"	옥수수 40 수수 20 등외품 10대두박 7	기타박류 18 패분 2 식임 1 인산칼슘 2



◎ 서울 특별 시 고 시 제 189 호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제 123 호 ( 73. 4. 4 )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건설국 건설행정과와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

1973. 12. . . .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순화동 , 의주로 1, 2 가충정로 1, 2 가

2. 사업의종류및명칭 : 염천교 - 서대문간도로 확장공사

3. 사업의규모 : 폭 40 m 연장 830 m  
지하차도폭 15 m 연장 250 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의 착수및 준공예정일 :  
73. 11. . . - 74. 12. .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목 , 지적 및 건물의 조성 ( 별첨 )

7.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

토 지 조 서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순화동	207-1	대	27.7	207-1	대	27.7	순화동 207-1	정영국	
2	"	207-5	"	2.5	207-5	"	2.5	"	"	
3	"	126-1	"	56.4	126-1	"	56.4	충정로 2가 5-4	김상국	
4	"	126-2	"	0.1	126-2	"	0.1	"	"	
5	"	126-6	"	0.2	126-6	"	0.2	"	"	
6	"	127-1	"		127-1	"		순화동 127	김중혁	

28-11

순 위	소재지	분할전 표시			분할후 표시 (수용대상)			소유자		권리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7	순화동	127	대		127	대		순화동 127	김종혁	
8	"	126-3	"	7.3	126-3	"	7.3	충정로 2가 5-4	김상열	
9	"	106-1	"	27.7	106-1	"	27.7	순화동 106	이주의	
10	"	120-2	"	82	120-2	"	82	순화동 120-2	지도만	
11	"	120-5	"	21	120-5	"	21	순화동 120-3	박상녀외2	
12	"	120-1	"	7.6	120-1	"	7.6	"	"	
13	"	116-3	"	1.1	116-3	"	1.1	춘천시중앙동2가4	한성일	
14	"	116-4	"	6.6	116-4	"	6.6	"	"	
15	"	118-4	"	322.9	118-4	"	322.9	"	조선축산Co	
16	"	117-2	"	0.2	117-2	"	0.2	순화동 126	고만호	
17	"	118-9	"	113.9	118-9	"	113.9	장충동 2가 186-26	박재희	
18	"	118-8	"	17.3	118-8	"	17.3	산선동 2가 200	장경순	
19	의주로 2가	23-2	"	51	23-2	"	51	신설동 205-18	김정옥	
20	"	20-2	"	6.6	20-2	"	6.6	"	용천농남	
21	"	19-1	"	18.8	19-1	"	18.8	합동 32	박용희	
22	"	24	"	56	24	"	56	장충동 2가 186-26	박재희	
23	"	26	"	13	26	"	13	"	"	
24	"	25-1	"	20	25-1	"	20	합동 32	박용희	
25	"	18-1	"	4.6	18-1	"	4.6	"	"	
26	"	27-1	"	15	27-1	"	15	장충동 2가 186-26	박재희	
27	"	27-7	"	31	27-7	"	31	"	조선축산Co	
28	의주로 1가	111-1	"	41	111-1	"	41	서소문 120-8	박은산	
29	"	110-1	"	13.7	110-1	"	13.7	의주로 1가 110	장대운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주용대상)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30	의주로 1가	109-1	대	48	109-1	대	48	의주로 1가 109	신정례	
31	"	108-4	"	17.4	108-4	"	17.4	"	허강열	
32	"	108-7	"	8.1	108-7	"	8.1	의주로 1가 108-1	홍성숙	
33	"	107-3	"	21.4	107-3	"	21.4	" 107-1	김춘성	
34	"	106-2	"	17.4	106-2	"	17.4	" 106-2	최남순	
35	"	43-1	"	20.3	43-1	"	20.3	" 43	유우일	
36	"	39-4	"	3	39-4	"	3	"	국유지	
37	"	39-3	"	27.8	39-3	"	27.8	의주로 1가 43	유우일	
38	"	38	"	22	38	"	22	불광동 산 39	오귀례	
39	"	37-1	"	120.6	37-1	"	120.6	"	"	
40	"	91-1	"	29.7	91-1	"	29.7	"	국유지	
41	"	80-2	"	459	80-2	"	459	"	"	
42	"	67-3	"	16	67-3	"	16	"	吉野新三郎	
43	"	66-1	"	23	66-1	"	23	재단법인원사학원		
44	"	64-3	"	0.3	64-3	"	0.3	"	吉野新三郎	
45	"	64-1	"	52	64-1	"	52	의주로 1가 64	"	
46	"	64-2	"	18.8	64-2	"	18.8	"	정현구	
47	"	63-1	"	29	63-1	"	29	"	"	
48	"	50-1	"	26.7	50-1	"	26.7	합자회사난가주조장		
49	"	51-1	"	2	51-1	"	2	의주로 1가 52-1	장용택	
50	"	49-2	"	13.4	49-2	"	13.4	북아현동 147-19	김용규	
51	"	48-2	"	13.8	48-2	"	13.8	인의동 48	김교성	
52	"	13-2	"	89	13-2	"	89	의주로 1가 - 48	신규성	
								세화동 163-3	강춘재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유자		관 제 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53	순화동	1-123	대	30	1-123	대	30	순화동 1-7	여성수	
54	"	1-124	"	9.6	1-124	"	9.6	서소문 120-19 신당동 373-7	송재득 박원환	
55	"	1-129	"	73.5	1-129	"	73.5	원효로 2가 58-11	김재철	
56	의주로 1가	55-41	"	8	55-41	"	8		국유지	
57	"	47-1	"	11	47-1	"	11		"	
58	"	14	"	31	14	"	31		좌창정길	
59	"	12	"	22	12	"	22		아금부용	
60	"	10-1	"	107.3	10-1	"	107.3		한국전력	
61	"	24-4	"	35.2	24-4	"	35.2	충정로 1가 75	농협	
62	"	7-1	"	27.2	7-1	"	27.2	"	"	
63	"	9	"	51	9	"	51	"	"	
64	"	8	"	29	8	"	29	"	"	
65	"	15-3	"	23.2	15-3	"	23.2		박산구	
66	"	7-2	"	25.5	7-2	"	25.5	의주로 1가 19-3	임영도	
67	"	6-2	"	10	6-2	"	10	주 "	"	
68	"	15-1	"	12.3	15-1	"	12.3	의주로 1가 15	박산구	
69	"	16-2	"	9.6	16-2	"	9.6	"	"	
70	"	16-1	"	10	16-1	"	10	"	"	
71	"	6-1	"	6	6-1	"	6	"	국유지	
72	"	4-9	"	3.9	4-9	"	3.9	의주로 1가 4	수도제빙 주식회사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73	의주로1가	4-8	대	4	4-8	대	4	의주로1가4	수도제빙 주식회사	
74	"	1-3	"	217.9	1-3	"	217.9	수하동17	오윤근	
75	"	1-2	"	23	1-2	"	23		국유지	
76	충정로2가	139	도로	18.6	139	도로	18.6	충정로2가141-3	민병두	
77	"	141-12	대	27.7	141-12	대	27.7	"	"	
78	"	138-3	"	0.9	138-3	"	0.9		국유지	
79	"	138	도로	22.7	138	도로	22.7	충정로2가22-7	민병학	
80	"	138-5	대	33	138-5	대	33	"	"	
81	"	138-6	도로	8.5	138-6	도로	8.5	"	"	
82	충정로1가	98-1	대	68	98-1	대	68	충정로1가98-1	이김영 옥임	
83	"	100-1	"	15.9	100-1	"	15.9	" 100-1	서현숙	
84	"	100-3	"	0.1	100-3	"	0.1	교북동35-2	김창범	
85	"	101-6	"	0.4	101-6	"	0.4		소산전량 소반차량	
86	"	97-4	"	0.6	97-4	"	0.6	행촌동144-11	심명수	
87	"	97-6	"	4.6	97-6	"	4.6	"	"	
88	"	97-5	"	5.4	97-5	"	5.4	교북동35-2	김창범	
89	"	97-1	"	2	97-1	"	2	행촌동209-56	윤도객	
90	"	101-5	"	4.4	101-5	"	4.4	교북동35-2	김창범	
91	"	101-4	"	8	101-4	"	8	행촌동209-56	윤도객	
92	"	101-1	"	47	101-1	"	47	충정로1가100-1	서현순	
93	"	101-3	"	2	101-3	"	2	신문로1가194	이종열	
94	"	102-4	"	0.8	102-4	"	0.8	충정로1가100-1	서현순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95	충정로1가	102-5	대	18.6	102-5	대	18.6	충정로1가102-5	정원숙	
96	"	103-1	"	19	103-1	"	19	" 103	조봉호	
97	"	102-1	"	34.4	102-1	"	34.4	신문로1가194	이종열	
98	"	86-4	"	34.2	86-4	"	34.2	공덕동38-135 만리동2가176	조방연 이순	
99	"	93-3	"	8	93-3	"	8	충정로1가72-32	이근성	
100	"	92-1	"	11.2	92-1	"	11.2	" 92	송재덕	
101	"	88-6	"	2.2	88-6	"	2.2	의주로1가158	조종완	

건물조서

번호	소재지	구조	총면적	수용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순화동116	목조와즙	9	9	춘천시중앙로2가4	한성일
2	" 117	"	5	5	순화동117	김자만
3	" 117	목조도단	5	5	"	"
4	" 106-1,2	목조와즙	31.46	31.46	" 139	양철목
5	" 120-1	"	1) 20 2) 7	20 7	" 120-1	송음전
6	"	"	14	14	"	박상녀
7	"	"	8.5	8.5	"	이교선
8	" 120-2	"	24	24	"	지도만
9	" 207	목조도단	33	33	" 207	김동규
10	충정로2가141-3,5,8,9	"	45	45	충정로2가141-3	민병두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227 호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도봉토지구획정리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47 조, 제 56 조 및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2. 환지예정지 계획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에 비치하고 있음.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따로 통지할 것이나, 수령하지 못하시는 사람에게는 이 공고로 가름함.

1973.12.5.

서울특별시장

4. 환지예정지 지정 계획

종 전 의 토 지				가 산	표 준	환 지 예 정 지					
농 명	지 번	지 목	면 적	면 적	면 적	구 회	부 호	권 리 면 적	환 지 면 적	정 수	교 부
도 봉	361	답	(498 중) 237	-	-	구 회 정 리 사 업 법 제 52 조 의 지			전 액		금 전 으
"	364	"	(845 중) 646	-	-	로			철 산 함.		
"	368	"	(899 중) 440	-	-						
"	360	전	198	-	-						
"	365	대	66	-	-						

◎ 서울특별시 공고제 228 호

환지계획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1. 망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47 조와 동법제 55 조 및 동법제 33 조의 규정에 의

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공람공고한다.

2. 환지계획변경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3.12.6.

서울특별시장

사 령

◎ 1973.12.1.

동대문구 지방행정  
사무관 양재용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1 호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기 김임수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1 호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기 조영택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1 호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기 이종식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1 호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사무관 김동찬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1 호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기 박창우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1 호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사무관 이인득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4 호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 1973.12.3

내무국장 이사관 김찬희

감사관 겸무를 명함.

중 구 지적기원 안승민

73.11.7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하여 72.10.20 일 (발령

제 717 호) 징계파면처분을 동

일자로 취소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관광운수국장 이사관 주용준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에 보함.

공무원교육원 부이사관 손영한  
교수부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 보함.

감사관 부이사관 한중섭

서울특별시 관광운수국장에 보함.

재무국장 부이사관 이상복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에 보함.



동대문구청장 부이사관 안진  
 국가공무원법 제 73 조 제 2 제 1 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1973년 12월 3일  
 대통령령  
 © 1973.12.4.  
 용산구총무과 지방행정  
 사무관 김희수  
 동대문구 총무과장에 보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총무과 사무관 이창희  
 용산구 총무과장에 보함.  
 한강 지방토목  
 건설사업소 기원보 유재걸  
 은평출장소 파견근무를 해제함.  
 © 1973.12.5  
 환경과 지방토목  
 기사보 정동진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3 호의 규정  
 에 의거 휴직을 명함.  
 종로구보건소 지방간호사 김창숙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가축위생시험소 지방수의사 이하준  
 농정과 근무를 명함.

가축위생시험소 지방수의사 이강훈  
 농정과 근무를 명함.  
 가축위생시험소 지방수의원보 오석문  
 농정과 근무를 명함.  
 농정과 지방수의사 권순호  
 가축위생시험소 근무를 명함.  
 농정과 지방수의사보 나정태  
 가축위생시험소 근무를 명함.  
 농정과 지방수의원 김기근  
 가축위생시험소 근무를 명함.  
 구의 지방화공  
 수원지사사무소 기원 장원수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3.12.6  
 추영호  
 지방토목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동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지방기계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상정과 근무를 명함.

<p>최 태 영 지방지적기원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p>
<p>1호봉을 급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p>	<p>김 춘 심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p>
<p>김 상 기 지방지적기원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 정신병원 근무를 명함.</p>
<p>1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p>	<p>정 순 덕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p>
<p>함 병 남 지방지적기원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 정신병원 근무를 명함.</p>
<p>1호봉을 급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p>	<p>신 순 욱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p>
<p>황 윤 보 지방지적기원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p>
<p>1호봉을 급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p>	<p>김 효 진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p>
<p>김 용 애 지방약무기원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 중부병원 근무를 명함.</p>
<p>1호봉을 급함. 영등포병원 근무를 명함.</p>	<p>정 현 국 기획담당관실 지방행정 사무관</p>
<p>정 공 덕 지방약무기원보시보에 임함.</p>	<p>동대문구 세무 2 과장에 보함. 법무담당관실 지방행정 사무관 김 문 중</p>
<p>1호봉을 급함. 지방약무기원보시보에 임함.</p>	<p>기획담당관실 기획조정제장에 보함.</p>

<p>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 (지방철건설 본부파전중) 사무관 시정개발담당관실 파전근무를 명함.</p>	<p>김 응 주 도봉구 근무를 명함. 정 순 흥</p>
<p>경북성주군 행정주사 박 만 수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9 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p>	<p>지방토목기사보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급수과 근무를 명함. 운 영 지방보전기사보시보에 임함.</p>
<p>주택건설과 지방기 사 백 형 호 한강건설사업소 파전 ( 73.12.1 74.3.31 까지 ) 근무를 명함.</p>	<p>1 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전북전주시 지방행정 서기보 정 영 무</p>
<p>주택건설과 지방건축 기사 오 동 진 한강건설사업소 파전 ( 73.12.1 74.3.31 까지 ) 근무를 명함.</p>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3 호봉을 급함.</p>
<p>주택건설과 기항분 공무원 김 준 근 한강건설사업소 파전 ( 73.12.1 74.3.31 까지 ) 근무를 명함.</p>	<p>성동구 근무를 명함. 경북대구시 지방행정 서기 이 양 우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p>
<p>© 1973.12.10</p>	<p>지방행정서기에 임함. 4 호봉을 급함.</p>
<p>충북제천군 지방지적 재무과 기원보 이 영 제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지적기원보에 임함. 2 호봉을 급함.</p>	<p>성북구 근무를 명함. 전북보성군 지방행정 서기 백 완 선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p>

28-29

<p>2 호봉을 급함.</p> <p>종로구 근무를 명함.</p> <p>농수산부 지방행정 농정국 주사보 김 윤 호</p>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p> <p>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p> <p>3 호봉을 급함.</p> <p>농정과 근무를 명함.</p> <p>경기도내무국 지방행정 주사보 신 상 옥</p>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p> <p>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p> <p>3 호봉을 급함.</p> <p>중구 근무를 명함.</p>	<p>충남천안시 지방행정 서기보 시 봉 석</p>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p> <p>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p> <p>4 호봉을 급함.</p> <p>동대문구 근무를 명함.</p> <p>◎ 1973.12.15</p> <p>철도청 철도원 이 승 구 수원공무시험소 6 등 급</p> <p>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전입을 명함.</p> <p>지방철도원 6 등급에 임함.</p> <p>2 호봉을 급함.</p> <p>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p>
<p>서울특별시장</p>	